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22 . 1.

발 의 자 : 이민석 위원 외 6 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다.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마포구의회에서는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 이에 사전·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나날이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지방의원 윤리강령 지침에 부합하여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 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65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7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09.2.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22.>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